

연구과제 특수관계자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

제정 2020.11.23.

제1조 **【목적】** 이 지침은 협성대학교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(산학협력사업, 외부용역 과제 포함) 및 연구실적물에 특수관계자의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**【정의】** 연구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자는 연구책임자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.

제3조 **【적용범위】**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, 기타 연구개발사업 및 본교 명의의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 **【연구책임자의 의무】** ①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실적물을 생산함에 있어 연구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참여자를 성실히 관리하고, 연구자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
제5조 **【참여제한 원칙】** 연구책임자는 본인의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물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**【참여제한의 예외】** ①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, 과제 특성상 연구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연구계획서와 함께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은후 연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특수관계자가 대학의 전임 교원이거나 국가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(박사학위 소지)이상인 경우는 승인절차를 생략한다.

제7조 **【참여내용 관리】** ①특수관계자는 행정처리 업무, 단순 실험보조 등의 연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연구책임자는 특수관계자가 연구 참여시 실적물, 연구노트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고,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입증자료를 보관하여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**【미이행시 제재조치】**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에서 지적될 시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, 연구비 신청 제한 등 행·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연구원 활용 계획서

1. 인적사항

성명			
생년월일		소속기관	
참여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연구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보조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직접 기재 :)	참여기간	~

2. 관련 연구실적

- ▷
- ▷
- ▷
- ▷

3. 활용계획 (수행과제 정보 및 활용내역 작성/ 과제 연관성 구체적으로 작성)

- ▷
- ▷
- ▷
- ▷
- ▷

2020 년 월 일

연구책임자

(서명)

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